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
----------	----

제출년월일 : 1998. 9. 17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절차법시행('98. 1. 1)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시 처분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시에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처분이유제시, 처분전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개정함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구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견진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
에게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청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진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